

◆이사전원: 【박수】

◆류명수 이사장: 자, 그럼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법인 추경, 사무직원 외부 기관 파견 근무 심의로 총 두 건입니다. 우선, 국장님 지난 회기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김민수: 네, 지난 제4차 이사회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이었던 성영근 이사 선임 의결 건은 원안 가결되어 교육청에 보고하였습니다. 기타 토의에서는 세인교육재단 운영비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은 계획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회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불어 추가로 보고드릴 상황은 우리 법인이 유치원 인수 및 운영을 하기 위하여 기본재산 보상금으로 유치원 인수 및 운영에 사용하고자 교육감에게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교육감은 폐교 당시 제출한 기본재산 처리방안에 유치원 운영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기존 기본재산과 동일한 용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불허 처분하여 소송에 이르렀습니다.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사립학교법상 유치원도 사립학교에 해당하며, 고등학교에서 유치원으로의 전환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며, 학교법인이 기존 학교 폐교 후 유치원 인수 운영을 추진한 것은 정관 변경 등 절차를 거쳤고, 교육감도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기에 불허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 및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법인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을 활용해 유치원 등 다른 사립학교 즉 외국인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전원: 【박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승소 했으니 교육청이 그동안 갑질한 것이 증명되었네요.

◆류명수 이사장: 그동안 우리 국장님이 소송 대응 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혼자서 잘 대응해서 승소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 국장 정도 되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이사전원: 【박수로 노고를 치하하다】

◆류명수 이사장: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안건 2026학년도 학교법인 세인교육재단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건을 상정하겠습니다.(의사봉 3타) 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민수: 네, 나눠드린 자료 중 1추경 예산서를 보시면, 세입의 경우 교육청으로부터 수익용 기본재산(현금) 처분 허가를 받아 재산수입의 기타재산매각수입에 171,000,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잡수입의 예금이자수입에 33,533,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의 경우 사무직원의 인건비와 법인 운영에 필요한 수용비 법인 사무실 월세 등 사무비에서 16,276,000원을 증액하였고, 인건비 미지급 연체금 등 잡지출에서 1,75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 및 관리에 따른 기타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의 변동 사항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입·세출을 각 204,553,000원 증액하여 총 16,467,820,000원으로 2026학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예산에 관하여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은정 이사: 이번 추경에서 제일 큰 부분이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기타재산매각수입의 반영인데, 교육청의 허가 절차는 모두 완료된 것입니까?

◆사무국장 김민수: 네, 지난 5월 11일 교육청에 수익용 기본재산(현금) 처분에 따른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당시에는 법인 운영에 필요한 약 250,000,000원 규모의 사용계획을 반영하여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다만, 교육청 심사 과정에서 처분대금의 사용 목적을 재산세, 인건비 등 최소한의 법인 운영경비로 한정하여 171,000,000원에 대해서만 사용 허

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 허가 금액만을 반영하여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서영섭 이사: 세출 부분에서 사무비와 잡지출이 증액되었는데, 법인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무국장 김민수: 네. 사무직원 인건비와 법인 운영에 필수적인 수용비, 사무실 임차료, 재산세 등 실제 집행이 예상되는 최소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서영섭 이사 이사: 교육청 허가 범위 내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집행 과정에서도 투명성과 효율성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민수: 네.

◆류명수 이사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법인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예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이사전원: 【없습니다.】

◆류명수 이사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6학년도 학교법인 세인교육재단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사전원: 【찬성한다.】

◆류명수 이사장: 이상으로 2026학년도 학교법인 세인교육재단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어서 두 번째 안건 사무직원 외부 기관 파견 근무 심의의 결 건을 상정하겠습니다.(의사봉 3타) 국장님 제안 설명해주세요.

◆사무국장 김민수: 본 안건은 법인의 재정 건전성 확보 및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한 사무국장 외부 기관 파견 근무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사립학교법」 제18조의2 제4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 제2항

「공공기관 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준하여 비공개

「사립학교법」 제18조의2 제4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 제2항

「공공기관 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준하여 비공개

「사립학교법」 제18조의2 제4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 제2항

「공공기관 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준하여 비공개

◆류명수 이사장: 안건2 이후의 내용 중 진행 중인 협상 및 법률 검토 사항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비공개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전원: 네. 【이사전원 동의하다】

◆류명수 이사장: 두 번째 안건의 의결 내용은 비공개로 결정됐습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기타 논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이상으로 2026학년도 제5차 학교법인 세인교육재단 이사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 서명은 저와 이은정 이사님, 김규홍 감사님께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은정 이사: 네

◆김규홍 이사: 네

◆류명수 이사장: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이사님들과 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전원: 【수고하셨습니다.】

폐회 18시 50분

이사회 참석 임원

류 명 수 _____

구 자 록 _____

김 규 홍 _____

신 수 진 _____

서 영 섭 _____

이 은 정 _____

성 영 근 _____

박 귀 비 _____